

목 차

● 입 법 예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4-2308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4-2316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4

● 공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4-2313호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 계획구역 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4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 공고 38

입 법 예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4-230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기간 동결된 소송수임료 및 포상금을 현실화하고,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을 형사재판까지 확대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송대리인의 소송수임료를 현실화함.(안 제30조제1항, 별표)
- 나. ‘중요소송 등 소송비용’의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 현실화함.(안 제30조의2)
- 다. 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화함.(안 제31조제2항)
- 라. 직무관련사건 형사재판에 대한 법률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35조의2)
- 마.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의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참조 : 기획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knskylove@yangcheon.go.kr

2) 주 소: (080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기획예산과

3) 전 화: 02-2620-3197

4) 팩 스: 02-2620-44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기획예산과 법무팀(02-2620-319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1억 원 이상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1억원 이상인 사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문서주관과장”을 “문서주관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법무담당과장”을 각각 “법무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무담당과장”을 “법무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무담당과장”을 각각 “법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담당과장”을 “법무담당부서장”으로,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소송수행자등””을 ““소송수행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송수행자등”을 “소송수행자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송주관과장은 법무담당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은 법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수행자등”을 “소송수행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판결주문”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청구원인”을 “판결주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송주관과”를 “소송주관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담당과장”을 “법무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송가액”을 “소송물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관례”를 “행정선례”로, “관례가”를 “선례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소송수행자등의 지정)”을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소송수행자등을 법무담당과장”을 “소송수행자 등을 법무담당부서장”으로, “소송수행자등의”를 “소송수행자 등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소송수행자등”을 “소송수행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담당과장”을 “법무담당부서장”으로, “소송수행자등”을 “소송수행자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출”을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고”를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소송주관과장 또는 법무담당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 또는 법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증거서증”을 “서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출석”을

“출석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여부”를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소송주관과장”을 각각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하고, 제3항 중 “법무담당과장”을 “법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송주관과장”을 각각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법무담당과장”을 “법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판시사유”를 각각 “판결이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승소의”를 “승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불복의”를 “불복”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송주관과장”을 각각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구에”를 “구청장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가”를 “구청장 등이”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미불(未拂) 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를 “(미지급 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수용취득된”을 “수용된”으로, “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특히”를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상이 미지급된”을 “미지급 보상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심”을 “회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심은”을 “회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추심에”를 “회수에”로, “소송주관과장은 법무담당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은 법무담당부서장”으로, “추심을”을 “회수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추심”을 “회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채무자가”를 “상대방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추심”을 “회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및”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도개선이나 또는 법령의 개정건의”을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소송주관과장”을 각각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소송주관과장”을 각각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하고, 제4항 후단 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중요소송 지정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중요소송”을 각각 “중요소송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중요소송으로 결정된”을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된”으로, “제30조제4항”을 “제30조의2”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별승소사례금”을 “특별승소사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무담당과장”을 “법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요소송 지정 등)”을 “(중요소송 등 지정 및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담당과장”을 “법무담당부서장”으로, “소송주관

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중요소송”을 “중요소송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10억 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담당과장은 소송주관과장”을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주관부서장”으로, “중요소송”을 “중요소송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무담당과장”을 “법무담당부서장”으로, “중요소송으로”를 “중요소송 등으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경비를”을 “소송비용을 심급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송수행자등”을 “소송수행자 등”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중요소송 등 소송비용)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 범위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승소 시에 소송물가액에 관계없이 1억원 이내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특별 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의 합은 1억원 이내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을 “송무취급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안사건-1심 20만원, 2심·3심 10만원.(단, 영업정지처분 등 관련 소송 사건은 10만원) 다만, 소송대리인 선임시 위 금액의 50%

제31조제2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사건-1건당 5만원.

제31조제2항제3호 중 “1백만 원”을 “1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천만 원”을 “1천만원”으로, “5백만 원”을 “5백만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주관과장”을 “업무주관부서장”으로, “법무담당과장”을 “법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 등은”을 “등 지정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무담당과장”을 “법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형사재판)”을 “검찰수사 종결될 때까지(재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직무관련사건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 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장은 방침을 받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관과장”을 각각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무담당과장”을 각각 “법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제3항 중 “소송수행자등”을 “소송수행자 등”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수행자등”을 “소송수행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고 :”를 각각 “보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고 :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장”을 “보고: 구청장 등”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수임료 등에 관한 적용례) 시행일 기준 착수금이 지급되어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승소사례금은 개정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기준에 의한 착수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2조(중요소송 등에 소송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 신설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에도 적용한다.

[별표]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

(제30조, 제35조, 제35조의2 관련)

구분 소송	내 용	지 급 기 준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공 통 경 비
행정 · 민사 소송 ·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	1. 신청사건		1. 승소비율이 50%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1. 인지대: 실비
	가.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원		2. 송달료: 실비
	나.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원	2. 승소비율이 60%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감정·감정비: 실비
	2.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4.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가. 3천만원 미만	1,000,000원	3. 승소비율이 80%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5. 기타: 실비
	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00,000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00,000원	4. 소취하(쌍불취하 포함) 또는 인락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000,000원		
	마. 10억원 이상	5,000,000원	5. 중요신청사건 : 100만원	
	3. 환송심	원심의 1/2 (단, 동일변호사 선임 시)		
행정 심판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1,500,000원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1,000,000원		1.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2. 다수 관련사건	2,000,000원		2. 기타: 실비
	3.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3,000,000원		

※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함.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사건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담당관·과장(이하 “소송주관과장”이라 한다)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소송주관부서장”----- -----.
제3조(소송주관) ① 소송사건은 소송주관과장이 주관한다. ② (생략)	제3조(소송주관) ① ----- 소송주관부서장-----.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서울특별시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1. (생략) 2. 위임사무에 대해 제기된 소송가액 1억 원 이상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3. (생략) ② (생략)	제4조(서울특별시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1억원 이상인 사건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류 등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 ----- 문서

주관과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과장에게 이송 하여야 한
다.

② 법무담당과장은 이송된 소송문서
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송무용전에 불
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확
하게 기록하여 즉시 소송주관과장에
게 보내어 처리하게 한다.

③소송문서가 착오로 이송된 경우에
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즉
시 법무담당과장에게 반송한다. 다
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과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반송
할 수 없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
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과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과장이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되, 응소할 때에는 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
나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는 상소마
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
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과장이 작성

주관부서장----- 법무
담당부서장-----.

② 법무담당부서장-----

----- 소송주관부서장--
-----.

③-----

-- 법무담당부서장-----.
----- 소송주관부서
장-----
---.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
----- 법무담당부서장-----
-----.

② -----
----- 법무담당부서장-----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
----- 소송주관부서장-----

· 보관한다. 다만, 법무담당과장은 소송지휘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분을 비치할 수 있다.

1. · 2. 삭 제

3. ~ 11.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및 결정문의 원본은 법무담당과장이 보관하고, 사본은 소송주관과장이 보관한다.

③ (생 략)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제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소송주관과장은 즉시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방침 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과장은 법

-----.

-----.

3. ~ 11. (현행과 같음)

② -----
----- 법무담당부서장-----
----- 소송주관부서장-----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소송의 착수) ① -----

- 소송주관부서장-----

---- “소송수행자 등”-----

--.

② ----- 소송수행자 등

-----.

제10조(소송수행방침 결정) ① -----

----- 소송주관부서장은 법

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 이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작성되는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들의 지정이나 지명 또는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 7. (생 략)

③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매 사건마다 소송주관과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 3. (생 략)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무담당부서장-----

--.

② -----
----- 소송수행자 등

-----.

1. (현행과 같음)
2. ----- 청구원인
3. 판결주문 -----
4. ~ 7. (현행과 같음)

③ -----
-- 소송주관부서 -----

-----.

④ -----
----- 법무담당부서장-----

-----.

1. 소송물가액-----

2. · 3. (현행과 같음)
4. -----
----- 행정선례-----

반하여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5. · 6. (생 략)

⑤ (생 략)

제11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① 소송주관과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법무담당과장에게 지정이나 지명 또는 선임의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이나 지명 또는 선임된 소송수행자등이 사망, 퇴직, 전출, 사고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나 지명 또는 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송수행자등에게 지정서나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교부한다.

1. ~ 5. (생 략)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 선례가 -----

5. ·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소송주관부서장-----
----- 소송수행자 등을 법무담당부서장-----
----- 소송수행자 등의 -----

소송수행자 등-----

--.

② 법무담당부서장-----

소송수행자 등-----
-----.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

-----.

1. -----
-----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방침문의 작성·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
고. 다만, 소송주관과장 또는 법무
담당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

4. (생략)

5.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및 관리

6. (생략)

② (생략)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1. (생략)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4. (생략)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
음 각 호의 소송진행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승소한 사건의 상대방 상소 여부

2. -----
보고에 관한 사항

3. -----
-- 소송주관부서장 또는 법무담당
부서장-----
-----.

4. (현행과 같음)

5. ----- 관리에
관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서증 ---

3. ----- 출석 및 ---

4.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여부
에 관한 사항

6. (생 략)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
주관과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
결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과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과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법무담당과장
과 협의하여 판결금의 가지급 등 이
행 여부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
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6조(제소) ① 소송주관과장은 제소
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
한다.

② 소송주관과장은 제소 후 소의 목
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18조(상소) 소송주관과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

6. (현행과 같음)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
주관부서장-----

-----.

② ----- 소송주관부서장---

-----.

③ 소송주관부서장-----
----- 법무담당부서장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제소) ① 소송주관부서장-----

-----.

② 소송주관부서장-----

-----.

제18조(상소) 소송주관부서장-----

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19조(상소포기) 소송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생략)

제20조(소송고지) ① 소송주관과장은 소송사건이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과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담당관·과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담당관·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과에 이를 통보하여 협

-----.

제19조(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장-----

--- 법무담당부서장-----
-----.

1. 판결이유-----

2. 판결이유-----
-- 승소 -----

3. 불복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장-----

-----.

② 소송주관부서장-----

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이 후라도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미불(未拂) 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소송주관과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미지급된 토지에 대한 임료(賃料)청구사건, 수용취득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하여 확보해야 한다.

1. ~ 4. (생략)
5. 보상이 미지급된 경위와 사유
6. · 7. (생략)

제24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

제21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
----- 구청장
등에 -----

-----.

② -----

----- 구청장 등이 -----

-----.

제23조(미지급 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소송주관부서장-----

----- 수용된 -----
-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
에 있어서는 -----
-----.

1. ~ 4. (현행과 같음)
5. 미지급 보상의 -----
6. · 7. (현행과 같음)

제24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소송비용의 추심

4.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 (생략)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주관과장은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채무자가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소
송주관부서장-----
-----.

1. 2. (현행과 같음)

3. ----- 회수

4. (현행과 같음)

② -----
회수는 -----.

1. 2. (현행과 같음)

③ ----- 회수
에 -----
----- 소송주관부서장은 법무담당
부서장----- 회
수를 -----.

1. 회수-----

2. 상대방이 -----

3.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소송 목적이 실현된 소송사건의 소취하에 소송주관과장이 동의한 경우

5. (생략)

제25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및 변경

2. ~ 4. (생략)

5. 패소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이나 또는 법령의 개정건의

6. 삭제

7. (생략)

② 소송주관과장은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3. -----
회수-----

4. -----
----- 소송주관부서장-----

5. (현행과 같음)

제25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 소
송주관부서장-----

-.

1. ----- 또는 -----

2. ~ 4. (현행과 같음)

5. -----
-----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

7. (현행과 같음)

② 소송주관부서장-----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구상권 행사)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소송주관과장은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송주관과장은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송주관과장은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7조(임의변제) ① 소송주관과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구상권 행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소송주관
부서장-----
-----.

④ 소송주관부서장-----

-----.

-----.

⑤ 소송주관부서장-----

-----.

제27조(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장-----

-----.

② 소송주관과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 시 또는 패소 후 상소 포기 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 소송주관
과장은 청구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
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를
받아야 하고, 청구 금액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
의 대리인이 있으면 별지 제17호서
식의 임의변제청구위임장을 첨부하
여야 한다

제28조(소송심의회) ① 구청장 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② 소송주관부서장-----

-----.

③ (현행과 같음)

④ ----- 소송주관
부서장-----

----- 첨부하
여야 한다.

제28조(소송심의회)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

--.

② _____

_____.

1. -----
중요소송 등 -----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제29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결정된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정 및 제30조제4항에 따른 특별착수금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별승소 사례금 심의

4. ~ 6. (생략)

③·④ (생략)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 ⑧ (생략)

제29조(중요소송 지정 등) ①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과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략)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 원 이상의 민사소송

3. 소송물가액 10억 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

② 법무담당과장은 소송주관과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회의 심의

2. 중요소송 등-----

3. -----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된 ----- 제 30조의2----- 특별승소사례금 -----

4. ~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법무담당부서장-----.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중요소송 등 지정 및 해제) ① 법무담당부서장----- 소송주관부서장----- 중요소송 등 -----.

1. (현행과 같음)

2. ----- 10억원 -----

3. ----- 10억원 -----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주관부서장-----

를 거쳐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하거나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과장은 일련의 소송들에서 쟁점이 공통되어 통일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중요소송에 준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한다.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같다.

② (생략)

③ 삭제

④ 제29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특별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5천만 원 이하
2. 소송물가액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3. 그 밖에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물가액에

---- 중요소송 등 -----

--.

③ 법무담당부서장-----

----- 중요소송 등으로 -----

-----.

제30조(수임료 등) ① -----

-----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 -----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관계없이 1천만 원 이하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승소 사례금은 판결확정시에 소송물가액에 관계없이 5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⑥ 구 및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5만 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⑥ -----

소송수행자 등-----

-----.

제30조의2(중요소송 등 소송비용)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 범위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승소 시에 소송물가액에 관계없이 1억원 이내에

서 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을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의 합은 1억원 이내로 한다.

제31조(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을 승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사무취급공무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재판상화해를 포함한다)사건 및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1. 본안사건-1건당 10만 원. 다만,

제31조(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송무취급
공무원

② -----

-----.

-----.

1. 본안사건-1심 20만원, 2심·3심 1

소송대리인 선임 시 5만 원

2. 신청사건-1건당 5만 원. 다만, 소송대리인 선임 시 미지급

3. 중요소송의 포상금은 최종 승소 확정시 승소율·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1백만 원의 범위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구에 대한 1천만 원 이상의 금전 채권의 전부 또는 5백만 원 이상의 금전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같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주관과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법무담당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직근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

0만원.(단, 영업정지처분 등 관련 소송사건은 10만원) 다만, 소송대리인 선임시 위 금액의 50%

2. 신청사건-1건당 5만원. -----

3. -----

--- 1백만원-----
-----.

③ -----

----- 1
천만원 -----
-- 5백만원 -----

-----.

제32조(수행절차 등) ① -----
업무주관부서장-----
----- 법무담당부서장-----

---.

② -----

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소송사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무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임장을,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소송대리인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사건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 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생략)

제34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직무관련사건 중 형사사건 주관과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 등 지정은 -----
-----.

③ 법무담당부서장-----

-----.

제33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
----- 검찰수
사 종결될 때까지(재판-----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
주관부서장-----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직무관련사건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 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장은 방침을 받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 회수) ① 직무관련사건 중 형사사건 주관과장은 사건 당사자인 공무원이 기소되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 중 민사소송 주관과장은 소속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7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법무

제36조(비용 회수) ① -----
----- 주관부서장-----

-----.

② ----- 주관
부서장-----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무

담당과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③ 법무담당과장은 소송사무의 지도·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자들의 소송해태와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인한 패소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8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 보고 :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라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보고 :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

담당부서장-----
-----.

1. ~ 5. (현행과 같음)

③ 법무담당부서장-----

소송수행자 등-----

-----.

제38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 등-----
-----.

1. ----- 보고: -----

-----.

2. -----
----- 보고: -----

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 나. (생략)

3. 법무부장관에 보고 :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 다. (생략)

[별표]

소송수임료등지급기준

구분	내 용	지 급 기 준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공 통 경 비
행정소송	1. 신청사건		1. 승소비용이 50%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1. 인지도:실비
	가.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원	2. 송달료:실비	2. 송달료:실비
	나.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원	3. 감정·감정비:실비	3. 감정·감정비:실비
민사소송	2. 본안사건(소송물가약별)		4. 출장여비: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의함	4. 출장여비: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의함
	가. 3천만원 미만	1,000,000원	5. 기타:실비	5. 기타:실비
	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00,000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500,000원		
헌법재판소	라. 1억원 이상	4,000,000원		
	3. 환송심	원심의 1/2 (단, 동일번호사건일 시)		
행정심판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1,500,000원		
	1. 개인 단독사건	1,000,000원		
	2. 다수 관련사건	2,000,000원		
	3. 구 처분의 대등이 필요한 사건	3,000,000원		

※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함.

-----.

가. · 나. (현행과 같음)

3. ----- 보고: 구청장 등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별표]

소송수임료등지급기준

(제30조, 제35조, 제35조의2 관련)

구분	내 용	지 급 기 준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공 통 경 비
행정소송	1. 신청사건		1. 승소비용이 50%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1. 인지도:실비
	가.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원	2. 송달료:실비	2. 송달료:실비
	나.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원	3. 감정·감정비:실비	3. 감정·감정비:실비
민사소송	2. 본안사건(소송물가약별)		4. 출장여비: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의함	4. 출장여비: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의함
	가. 3천만원 미만	1,000,000원	5. 기타:실비	5. 기타:실비
	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00,000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00,000원		
헌법재판소	라. 1억원 이상	4,000,000원		
	3. 환송심	원심의 1/2 (단, 동일번호사건일 시)		
행정심판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1,500,000원		
	1. 개인 단독사건	1,000,000원		
	2. 다수 관련사건	2,000,000원		
	3. 특별히 구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3,000,000원		

※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함.

입 법 예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4-231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용되는 자치법규 제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상 미비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되는 자치법규 제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의하여 오류문구,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2호, 제3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월 15일까지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전화 : 02-2620-3441, FAX : 02-2620-4429, E-mail : sodud3130@yang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을 “수집인”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수집인”을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인 가구 중 50세 이상인 사람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수집인”이란 ----- ----- -----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50세 이상의 1인 가구 ② (생략)	제5조(지원대상)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양천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인 가구 중 50세 이상인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공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4-2313호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4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23.09.1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목동14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양천구 공고 제2024-784호(2024.04.25.)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4년 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양 천 구 청 장

- I. 공람기간 : 2024년 12월 26일 ~ 2025년 01월 27일
- II. 공람장소 : 양천구청 재건축사업과(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6층)
(☎02-2620-3458)
- III. 의견제출처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 IV.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371,097.4	-	4,371,097.4	100.0	-
주거 지역	소계	3,171,522.3	-	3,171,522.3	72.6	-
	제1종일반주거지역	261,315.2	증) 590.0	261,905.2	6.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34,953.8	-	234,953.8	5.4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6,609.2	-	606,609.2	13.9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68,644.1	감) 590.0	2,068,054.1	47.3	-
중심 지역	소계	568,384.8	-	568,384.8	13.0	-
	일반상업지역	568,384.8	-	568,384.8	13.0	-
공업 지역	소계	73,561.2	-	73,561.2	1.7	-
	준공업지역	73,561.2	-	73,561.2	1.7	-
녹지 지역	소계	557,629.1	-	557,629.1	12.7	-
	자연녹지지역	557,629.1	-	557,629.1	12.7	-

■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m ²)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신정동 330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1,905.2 (증) 590.0	• 목동1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내 도시 계획시설(공원,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해 용도지역 조정
-	신정동 329-2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68,054.1 (감) 590.0	• 목동1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동 주택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 변경

■ 도로 총괄표(기정)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106	57,399	967,401	19	6,072	179,611	41	26,233	270,420	46	25,094	517,370
광로	1	1,750	84,637	1	1,750	84,637	-	-	-	-	-	-
대로	37	40,293	634,717	1	1,823	61,137	5	14,332	65,154	31	24,138	508,426
중로	23	9,576	184,584	-	-	-	20	9,254	180,477	3	322	4,107
소로	45	5,780	63,463	17	2,499	33,837	16	2,647	24,789	12	634	4,837

※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107	57,389	979,394	21	7,280	195,101	40	25,015	266,923	46	25,094	517,370
광로	1	1,750	84,637	1	1,750	84,637	-	-	-	-	-	-
대로	37	40,293	634,717	1	1,823	61,137	5	14,332	65,154	31	24,138	508,426
중로	24	9,566	196,577	2	1,208	15,490	19	8,036	176,980	3	322	4,107
소로	45	5,780	63,463	17	2,499	33,837	16	2,647	24,789	12	634	4,837

※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해당사항임

※ 중로 2-277→ 중로 1-A, 중로 2-278 → 중로 1-B로 변경

- 규모 변경에 따른 중로 2류 2개소 감소 및 중로 1류 2개소 증가

※ 중로 2-C 신설에 따른 중로 2류 1개소 증가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12	50	주간선	1,750	안양천교	목1동 407-20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상수공급설비와 중복결정
기정	광로	1	78	10.8~ 147.5	주간선	7,530	신월동 835	여의도동 2-11	자동차 전용도로	-	서고시 2013-318 (2013.10.04.)	입체적 결정
기정	대로	2	36	30	주간선	3,663	진명여고 사거리	서울시계	일반도로	-	건고시 198 (71.04.07)	신월로
기정	대로	2	37	30	주간선	1,600	도림동	신길동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대로	2	38	30	주간선	7,250	외발산동	고척동	일반도로	-	건고시 198 (71.04.07)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73	30	주간선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대로	2	79	42	주간선	1,550	오목교	목동오거리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86	25~ 33.5	보조간선	6,950	양화동	광명시계	일반도로	-	"	제방과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46	25	보조간선	2,170	경인고속국도	강서구 목동 136-2	일반도로	-	"	중앙로 (강서로)
기정	대로	3	147	25	보조간선	1,527	대 2-79	신정동 80-1	일반도로	-	"	하수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48	25	보조간선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49	25	보조간선	1,415	대 3-169	신정동 83-5	일반도로	-	"	-
변경	대로	3	149	25~28 (3)	보조간선	1,415	대 3-169	신정동 83-5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0	25	집산도로	383	대 3-169	대 3-148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1	25	보조간선	2,000	대 3-169	대 3-86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대로	3	152	25~30	보조간선	2,000	대 3-169	대 3-86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3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4	25	보조간선	230	신정동 36-1	고척동 186-3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5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6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7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8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9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0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1	25	집산도로	150	대 3-148	대 3-150	일반도로	-	"	-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63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신정동 868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4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5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6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7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8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9	25	주간선 도로	529	대 3-86 (구역계)	대 3-173 (대 3-173)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0	25	보조간선	30	대 3-149	목동중교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1	25	보조간선	880	구로구 고척동 41-1	강서구 신정동 171-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2	25	보조간선	323	대 3-148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3	25	주간선	150	대 3-150	대 3-148	일반도로	-	"	하수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74	25	보조간선	894	-	-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205	25	집산도로	150	대로3-147	대로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25	보조간선	330	대 3-152	목동 914-3	일반도로	-	양천구공고 225호 (04.07.05)	목동 운동장과 유수지 사이길
기정	중로	2	263	15	집산도로	548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중로	2	264	15	집산도로	255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5	15	집산도로	463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6	15	집산도로	498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8	15	집산도로	534	대 2-36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9	15	집산도로	365	중 2-271	대 2-36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0	15	집산도로	516	중 2-271	대 2-73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1	15	보조간선	350	대 3-149	신정동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2	15	집산도로	443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3	15	집산도로	370	중 2-276	대 3-154	일반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74	15	집산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 (신정동)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5	15	집산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 (신정동)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6	15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77	15	집산도로	582	대 2-37	신정동 331-1	일반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변경	중로	1	A	25~34	집산도로	248	대 2-37	신정동 331-2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 폐도 (철도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78	15	집산도로	960	대 3-86	강서구 신정동 294-4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1	B	21~25 (21)	집산도로	960	대 3-86	신정동 329-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9	15	집산도로	150	광 1-12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80	19	집산도로	501	광 1-12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81	15	집산도로	326	신정동 76-22	신정동 80-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82	15	집산도로	290	대 3-147	목동 408-115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C	15~27	특수도로	314	중 1-B	신정동 1278	보행자 전용도로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3	261	12	집산도로	150	대 3-150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262	12	집산도로	150	대 3-150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338	12	집산도로	22	대 3-171	신정동 330-1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240	목동 917-2	목동 918-2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사422호 (94.12.27)	-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250	목동 917-2	목동 918-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170	목동 924-1	목동 924-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170	목동 923-1	목동 924-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230	신정동 319-4	신정동 318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7	10	특수도로	230	신정동 320-3	신정동 319-4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8	10	특수도로	160	신정동 322-3	신정동 321-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9	7	국지도로	7	신정동 312-3	신정동 1126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64	대 3-147	신정동 134-3	일반도로	-	"	-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40	대 3-147	신정동 31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2	10	특수도로	150	대 3-151	대 3-15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3	10	특수도로	70	목동 908-38	목동 908-35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4	10	특수도로	85	목동 908-35	대 3-157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5	10	특수도로	95	광 1-12	대 3-159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6	10	특수도로	170	대 3-168	대 2-7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7	11	특수도로	184	대로3-173	대로2-79 (오목로)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8	10~ 27	특수도로	184	대로2-79 (오목로)	목동 408-178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2	8	특수도로	300	목동 900-8	목동 909-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300	신정동 324-3	신정동 323-1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소로	2	5	8	특수도로	380	목동 908-1	목동 907-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6	8	특수도로	260	신정동 323-1	신정동 322-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06	대 3-163	신정 318-10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210	대 3-147	대 3-164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04	대 3-147	대 3-16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116	대 3-147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92	대 3-149	대 3-16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92	대 3-147	대 3-16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180	대 3-152	대 3-15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90	대 3-151	대 3-15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20	대 3-152	목동 905-2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90	대 3-167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90	대 3-168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217	대 3-146 목동 산 29-3	목동 231-217	일반도로	-	서고시 152 (82.04.03)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85	신정동 296-7	신정동 296-5	일반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5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050-16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5	4	국지도로	9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050-15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0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123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123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5	6~ 10	국지도로	130	대 3-151	대 3-151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소로	3	16	6~8	국지도로	120	대 3-152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50	대 3-152	소 1-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50	대 3-152	소 1-1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136	대 3-151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5	6	특수도로	25	목동 905-1	목동 905-34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26	6	특수도로	32	대 3-151	소로 3-18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27	6	특수도로	22	소로 3-18	소로 1-1	보행자 전용도로	-	"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49	대로 3-149	• 도로 확폭 - 25m → 28m(3m 확폭)	• 목동동로의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한 도로 확폭
중로 2-277	중로 1-A	• 도로 확폭 - 15m → 25~34m(10~19m 확폭)	• 대상지로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중로 2-278	중로 1-B	• 도로 확폭 - 15m → 21~25m(6~10m 확폭)	• 대상지로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	중로 2-C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2호선 양천구청역과 주변 지역주민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철도 상부 보행자도로 신설

② 주차장 : 변경없음

③ 철도 : 변경

■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 장(m)	최 초 결정일	비 고
변경	①	철도	도시철도 (연결선)	신정동 1092일대 (신도림역~까치산역)	6,150 (585)	건고시 695호 (90.10.19)	도시철도 2호선
기정	②	철도	도시철도 (5호선)	목동 927-8일대 (목동역~오목교역)	19,000 (505)	건고시 695호 (90.10.19)	도시철도 5호선

■ 철도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철도	•철도 경계 조정	•지장물 현황(필지 지목현황)에 부합하도록 철도시설 경계 조정

2) 공간시설

① 공원 : 변경

■ 공원 총괄표(기정)

구 분	개 소	면 적(m ²)
합계	23	169,687.0
근린공원	4	84,494.4
문화공원	1	29,619.3
어린이공원	18	55,573.3

■ 공원 총괄표(변경)

구 분	개 소	면 적(m ²)
합계	21	169,712.1
근린공원	5	91,494.4
문화공원	1	29,619.3
어린이공원	15	48,598.4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제1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1-2	2,299.5	-	2,299.5	서고시 422호 (94.12.27)	1단지
기정	②	제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2-2	4,211.4	-	4,211.4	"	2단지
기정	③	제3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03-2	2,985.4	-	2,985.4	"	3단지
기정	④	제4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04-1	6,517.0	-	6,517.0	"	4단지
기정	⑥	제6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12-1	3,963.8	-	3,963.8	"	5단지
기정	⑦	제7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13-1	3,815.8	-	3,815.8	"	5단지
기정	⑧	제8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25-1	2,375.1	-	2,375.1	"	7단지
기정	⑨	제9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4-1	3,730.1	-	3,730.1	"	8단지
기정	⑩	제10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3-2	1,738.6	-	1,738.6	"	9단지
기정	⑪	제11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2-2	3,500.0	-	3,500.0	"	9단지
기정	⑫	제1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1-1	3,148.2	-	3,148.2	"	10단지
기정	⑬	제13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5-2	2,498.5	-	2,498.5	"	11단지
기정	⑭	제14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6-2	3,399.7	-	3,399.7	"	12단지
기정	⑮	제15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7-1	2,265.5	-	2,265.5	"	13단지
기정	⑯	제16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8-1	2,149.8	-	2,149.8	"	13단지
폐지	⑰	제17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9-2	2,433.9	감) 2,433.9	-	"	14단지
폐지	⑱	제18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32-1	2,511.3	감) 2,511.3	-	"	14단지
폐지	⑲	제19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30-1	2,029.7	감) 2,029.7	-	"	14단지
기정	근-①	신트리공원	근린공원	신정동310-7	16,409.3	-	16,409.3	"	-
기정	근-②	목마공원	근린공원	목동 910	12,816.8	-	12,816.8	"	-
기정	근-③	오목공원	근린공원	목동 921	21,470.4	-	21,470.4	"	-
기정	근-④	양천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20	33,797.9	-	33,797.9	"	-
기정	문-①	파리공원	문화공원	목동 906	29,619.3	-	29,619.3	"	-
신설	근-A	목동14단지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31	-	증) 7,000.0	7,000.0	-	14단지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⑰	제17 어린이공원	•공원 폐지 - 면적 : 감) 2,433.9㎡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어린이공원 폐지
⑱	제18 어린이공원	•공원 폐지 - 면적 : 감) 2,511.3㎡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어린이공원 폐지
⑲	제19 어린이공원	•공원 폐지 - 면적 : 감) 2,029.7㎡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어린이공원 폐지
근-A	목동14단지 근린공원	•공원 신설 - 면적 : 증) 7,000.0㎡	•안양천변 연계 및 주변 소규모 단지 지역주민을 고려한 근린공원 조성

② 녹지 :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3단지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03-7,8, 10~17	1,280.0	-	1,280.0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②	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04-2	14,793.8	-	14,793.8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③	4단지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04-5,6,7, 20~24	1,970.4	-	1,970.4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④	6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11-8	4,987.7	-	4,987.7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⑤	5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13-2	11,735.9	-	11,735.9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로 인한 녹지 분할
기정	⑥	목동교 서측IC녹지	경관녹지	목동914-1	6,498.7	-	6,498.7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⑦	목동교 서측IC녹지	경관녹지	목동911-7	7,207.9	-	7,207.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⑧	916-1 도 남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16-2	1,891.6	-	1,891.6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⑨	7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25-8	8,854.0	-	8,854.0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⑩	목동 927번 녹지	경관녹지	목동927-2	862.5	-	862.5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기정	⑪	927-9구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27-10	787.4	-	787.4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서측
기정	⑫	진명여고변 녹지	경관녹지	목동927 -11,12,13,14	6,622.8	-	6,622.8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⑬	8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4-2, 3	12,760.9	-	12,760.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⑭	9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3-3	6,217.1	-	6,217.1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⑮	9,10단지 북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2 -4,6,7,8,9,10,11, 12,13,14,15,16, 17 313-5,7	2,726.5	-	2,726.5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⑯	10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1-2	2,270.6	-	2,270.6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⑰	양명초등 북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0-5	803.0	-	803.0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⑱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4	10,815.9	-	10,815.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⑲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9	7,896.9	-	7,896.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⑳	11단지 남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 -13,14	3,031.9	-	3,031.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㉑	12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6-1	2,347.9	-	2,347.9	서고시 422호 (94.12.27)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㉔	13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8-2	6,013.1	-	6,013.1	서고시 422호 (94.12.27)	-
변경	㉕	1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9-1	6,833.6	감) 197.5	6,636.1	서고시 422호 (94.12.27)	-
변경	㉖	1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30-6	3,867.5	증) 762.4	4,629.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㉗	목동중학교 서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9-10	102.4	-	102.4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㉘	하수도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30 -16,23	411.5	-	411.5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㉙	하수도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30-17	341.9	-	341.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㉚	6단지 동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11 일대	2,812.3	-	2,812.3	-	-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㉕	14단지 연변녹지	• 녹지 면적 감소 - 면적 : 6,833.6㎡ → 6,636.1㎡ (감) 197.5㎡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녹지 선형 정형화
㉖	14단지 연변녹지	• 녹지 면적 증가 - 면적 : 3,867.5㎡ → 4,629.9㎡ (증) 762.4㎡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녹지 선형 정형화

3) 유통 및 공급시설

- ① 수도공급설비 : 변경없음
- ② 공동구 : 변경없음
- ③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 ④ 방송 · 통신시설 : 변경없음

4) 공공 · 문화체육시설

- ① 운동장 : 변경없음
- ② 체육시설 : 변경없음
- ③ 공공청사 : 변경없음
- ④ 문화시설 : 변경없음
- ⑤ 학교 : 변경없음

⑥ 사회복지시설 : 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어린이집(3단지)	사회복지시설	목동903-3	1,012.4	-	1,012.4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②	어린이집(10단지)	사회복지시설	신정동310-11	718.3	-	718.3	"	-
기정	③	노인종합복지관 (11단지)	사회복지시설	신정동325-3	2,141.7	-	2,141.7	"	-
폐지	④	어린이집(14단지)	사회복지시설	신정동329-4	1,247.1	감) 1,247.1	-	"	-
기정	⑤	남부준법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사회복지시설	신정동 330-11	3,353.8	-	3,353.8	"	-
기정	⑥	어린이집, 여성교실	사회복지시설	신정동 330-13	1,580.7	-	1,580.7	"	-
기정	⑦	청소년회관	사회복지시설	목동918	5,473.8	-	5,473.8	"	-
기정	⑧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정동319-13	1,987.0	-	1,987.0	"	-
신설	A	14단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정동 331	-	증) 2,000.0	2,000.0	-	-

■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기정	①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②	"	"	"	"
기정	③	"	"	"	"
폐지	④	"	"	"	"
기정	⑤	"	"	"	"
기정	⑥	"	"	"	"
기정	⑦	"	기준용적률 : 500% 이하 허용용적률 : 800% 이하	120m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⑧	"	"	80m 이하	"
신설	A	5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사회복지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	어린이집 (14단지)	• 어린이집 폐지 - 면적 : 감) 1,247.1㎡	• 목동14단지 주민공동시설 내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현황 어린이집 폐지
A	14단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 면적 : 증) 2,000.0㎡	• 지역 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신설

5) 방재시설 : 변경없음

6)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7)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계획

■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정		변경(안)		비 고
	가구번호	면적(m ²)	가구번호	면적(m ²)	
가구 -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A1	96,186.0	A1	96,186.0	변경없음
	A2	177,564.6	A2	177,564.6	변경없음
	A3	171,688.4	A3	171,688.4	변경없음
	A4	163,149.1	A4	163,149.1	변경없음
	A5	122,825.3	A5	122,825.3	변경없음
	A6	80,923.2	A6	80,923.2	변경없음
	A7	117,450.6	A7	117,450.6	변경없음
	A8	181,713.1	A8	181,713.1	변경없음
	A9	146,916.7	A9	146,916.7	변경없음
	A10	104,961.0	A10	104,961.0	변경없음
	A11	135,726.0	A11	135,726.0	변경없음
	A12	40,339.4	A12	40,339.4	변경없음
	A13	65,872.3	A13	65,872.3	변경없음
	A14	89,260.9	A14	89,260.9	변경없음
	A15	105,520.4	A15	105,520.4	변경없음
	A16	115,397.0	A16	115,397.0	변경없음
	A17	148,024.4	A17	148,024.4	변경없음
	A18	40,343.7	A18	40,343.7	변경없음
	A19	80,011.8	A19	80,011.8	변경없음
	A20	79,831.2	A20	79,831.2	변경없음
	A21	127,339.5	A21	127,339.5	변경없음
	A22	114,140.1	A22	114,140.1	변경없음
	A23	59,420.0	A23	59,420.0	변경없음
	A24	3,878.3	A24	3,878.3	변경없음
	A25	79,475.5	A25	76,081.8	• 목동14단지 획지 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 변경
	A26	95,644.5	A26	94,128.7	
	A27	136,937.4	A27	135,005.9	
	A28	17,593.8	A28	17,593.8	변경없음

구 분	기정		비 고
	가구번호	면적(㎡)	
가구 - 중심지역 (목동중심지구)	B1	12,816.8	변경없음
	B2	28,040.7	
	B3	21,071.8	
	B4	26,305.8	
	B5	29,619.3	
	B6	45,602.7	
	B7	33,246.0	
	B8	24,367.7	
	B9	49,207.0	
	B10	26,840.5	
	B11	22,945.9	
	B12	21,602.5	
	B13	16,835.0	
		23,863.0	
	B14	27,385.5	
	B15	29,559.5	
	B16	33,797.9	
	B17	22,220.7	
	B18	20,561.9	
	B19	18,044.4	
	B20	21,106.3	

2) 획지계획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①	A1	목동 900-4	3,302.8	-	-
기정	A1-②	"	목동 900-2	657.0	-	공공청사
기정	A1-③	"	목동 900-12	8,313.0	-	공공청사
기정	A1-④	"	목동 900-11	4,327.2	-	공공청사
기정	A1-⑤	"	목동 900	77,258.5	-	전기공급설비
기정	-	"	목동 900-16	455.9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목동 900-17	1,169.5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A2-①	A2	목동 901	163,197.4	특별계획구역1	1단지
기정	A3-①	A3	목동 902	155,041.1	특별계획구역2	2단지
기정	A4-①	A4	목동 903	146,538.1	특별계획구역3	3단지
기정	A5-①	A5	목동 904	101,514.5	특별계획구역4	4단지
기정	A6-①	A6	목동 913	70,485.4	특별계획구역5	5단지
기정	A7-①	A7	목동 912	108,854.4	특별계획구역5	5단지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A8-①	A8	목동 911 일대	90,074.6	특별계획구역6	6단지
기정	A8-②	A8	목동 911 일대	1,600.0	특별계획구역6	6단지 공공청사
기정	A11-①	A11	목동 925, 925-3	119,955.9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기정	A12-①	A12	목동 926, 926-2	38,208.7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기정	A13-①	A13	목동 927	21,985.3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기정	A13-②	"	목동 927-3	800.3	-	종교시설
기정	A13-③	"	목동 927-4	661.2	-	종교시설
기정	A14-①	A14	신정동 314, 314-5	72,108.0	특별계획구역8	8단지
기정	A14-②	"	신정동 314-4	661.9	-	종교시설
기정	A15-①	A15	신정동 313	67,895.8	특별계획구역9	9단지
기정	A16-①	A16	신정동 312	99,278.3	특별계획구역9	9단지
기정	A17-①	A17	신정동 311	141,874.9	특별계획구역10	10단지
기정	A18-①	A18	신정동 310, 310-2	34,051.4	특별계획구역10	10단지
기정	A19-①	A19	신정동 325	64,555.7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기정	A20-①	A20	신정동 325-1	39,491.2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기정	A21-①	A21	신정동 326	121,591.9	특별계획구역12	12단지
기정	A22-①	A22	신정동 327	111,874.6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기정	A23-①	A23	신정동 50,265.1	50,265.1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기정	A24-①	A24	신정동 329-8	1,320.0	-	종교시설
기정	A24-②	"	신정동 329-10	1,238.3	-	근생시설
기정	A24-③	"	신정동 329-12	660.0	-	종교시설
기정	A25-①	A25	신정동 329	68,960.9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변경	A25-①	A25	신정동 329 일원	69,445.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A26-①	A26	신정동 332	34,004.1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변경	A26-①	A26	신정동 332 일원	36,512.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A26-②	A26	신정동 331	52,143.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변경	A26-②	A26	신정동 331	41,680.4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변경	A26-③	A26	신정동 331	2,000.0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사회복지시설
기정	-	"	신정동 332-4	310.0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5	313.3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6	318.6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7	308.6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A27-①	A27	신정동 330	61,448.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변경	A27-①	A27	신정동 330	61,084.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1.1.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1.1.2. 용적률 계획 : 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46.96% 이하 / 299.87% 이하	6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48.40% 이하 / 300.00% 이하	14단지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300% 이하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름 - 허용용적률 $\times(1+1.3\times\text{가중치}$ $\times\alpha\text{토지}+0.7\times\alpha\text{건축물})$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1.1.3. 높이계획 : 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 변경

구 분	적용지역		계획기준		비 고
			기정	변경	
최고 높이 (층수)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25층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35층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49층 이하	49층 이하	6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35층 이하	49층 이하	14단지

② 기타지역 : 변경없음

라.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건축선 계획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기정

구 분	도면 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 고
건축한계선	I	이대목동병원 목동동로 연결부 오목로변	확지선으로부터 4m		중심지역 및 기존사가지 연접가로
	II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목동동로, 중앙로32길, 목동로3길 10·11·12단지 간 목동동로, 오목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8길, 목동동로10길, 목동서로12길	확지선으로부터 6m		단지 간 사이가로 및 그 외 경계부
		그 외 이면부, 7단지 서측경계부, 9단지 북측경계부, 14단지 구역경계부	확지선으로부터 6m	-	
		안양천로변, 신월로	-	확지선으로부터 6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결가로
	III	목동 900-4 안양천로변, 신정 313-1 목동로변	-	확지선으로부터 10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
	IV	목동서로2길, 오목로52길, 신정 329-12 목동동로변, 목동로8길	-	확지선으로부터 1m	기타지역 변 가로
	V	국회대로, 목동로	확지선으로부터 10m	확지선으로부터 6m	광역 통경축
고층부 벽면한계선 (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		국회대로, 목동로	확지선으로부터 13m	-	

※ 특별계획구역 내 저층부 건축지정선(2층이하) 적용구간은 적용 배제

※ 특별계획구역 1-3 내 개방형녹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 4 및 기타지역(목동 900번지)내 공개공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변경

구 분	도면 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 고
건축한계선	I	이대목동병원 목동동로 연결부 오목로변	확지선으로부터 4m		중심지역 및 기존사가지 연접가로
	II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목동동로, 중앙로32길, 목동로3길 10·11·12단지 간 목동동로, 오목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10길, 목동서로12길	확지선으로부터 6m		단지 간 사이가로 및 그 외 경계부
		그 외 이면부, 7단지 서측경계부, 9단지 북측경계부, 14단지 구역경계부	확지선으로부터 6m	-	
		안양천로변, 신월로	-	확지선으로부터 6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결가로
	III	목동 900-4 안양천로변, 신정 313-1 목동로변	-	확지선으로부터 10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
	IV	목동서로2길, 오목로52길, 신정 329-12 목동동로변, 목동로8길	-	확지선으로부터 1m	기타지역 변 가로
	VI	목동동로8길	확지선으로부터 6~10m	-	14단지 중앙 가로
고층부 벽면한계선 (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	V	국회대로, 목동로	확지선으로부터 10m	확지선으로부터 6m	광역통경축
		국회대로, 목동로	확지선으로부터 13m	-	

※ 특별계획구역 내 저층부 건축지정선(2층이하) 적용구간은 적용 배제

※ 특별계획구역 1-3 내 개방형녹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 4 및 기타지역(목동 900번지)내 공개공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1	목동 901 일대	165,496.9	-	165,496.9	목동 1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2	목동 902 일대	159,252.5	-	159,252.5	목동 2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3	목동 903 일대	150,543.5	-	150,543.5	목동 3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4	목동 904 일대	122,825.3	-	122,825.3	목동 4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5	목동 912 일대	204,003.2	-	204,003.2	목동 5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6	목동 911 일대	102,424.6	-	102,424.6	목동 6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7	목동 925 일대	225,141.5	-	225,141.5	목동 7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8	신정동 314 일대	88,599.0	-	88,599.0	목동 8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9	신정동 312 일대	183,057.8	-	183,057.8	목동 9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0	신정동 310 일대	194,686.2	-	194,686.2	목동 10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1	신정동 325 일대	128,668.4	-	128,668.4	목동 11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2	신정동 326 일대	127,339.5	-	127,339.5	목동 12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3	신정동 327 일대	178,919.9	-	178,919.9	목동 13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4	신정동 329 일대	250,722.1	-	250,722.1	목동 14단지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특별계획구역1 ~ 특별계획구역 13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4(목동14단지) : 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29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250,722.1㎡			
획지면적			• 202,689.0㎡ (80.8%)	획지1	69,445.7㎡ (27.7%)	공동주택부지
				획지2	36,512.7㎡ (14.6%)	공동주택부지
				획지3	35,645.8㎡ (14.2%)	공동주택부지
				획지4	61,084.7㎡ (24.4%)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48,033.1㎡ (19.2%)	사회복지시설	3,012.7㎡ (1.2%)	사회복지시설부지
				근린공원	12,021.9㎡ (4.8%)	
				녹지	11,266.0㎡ (4.5%)	
				도로	9,739.9㎡ (3.9%)	
				철도	11,992.7㎡ (4.8%)	일부 도로 중복결정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목동동로 : 28m (구역내 획지1 3m 확폭) - 목동로3길 : 16~31m (구역내 획지1 일부 3m 확폭) - 목동동로8길 : 24m (구역내 획지1 6m 확폭, 획지4 3m 확폭, 획지3 3~6m 확폭) • 근린공원 신설, 녹지(폭원 20m) 면적 증가 • 사회복지시설 신설 ※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 시 구역 내 철도시설 상부 도로는 주변 도로체계, 주민들의 이용 행태 및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전환 검토하고 인접 단지와 연계하여 시민이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충포판매소, 장의사, 다중 생활 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 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16m,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40m/획지2의 공공보행통로 남측변 폭 45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동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동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로3길, 목동동로8길, 획지2의 경계부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목동동로8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안양천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공동주택부지		
				사회복지시설부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고층부 벽면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동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로3길, 목동동로8길, 획지2의 경계부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동주택부지
		• 목동동로8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6m) • 안양천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4m)	사회복지시설부지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동로, 목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 용도 배치구간	• 목동동로변 • 목동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동로, 목동로, 목동로3길, 목동동로8길, 안양천로변(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입체 보행육교	• 안양천과의 연결을 위한 입체 보행육교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가로활성화 유도	

-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2) 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부지의 건축물의 용도·밀도는 해당시설의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 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 4)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 5)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변경(안)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29 일대		-	
특별계획구역 면적			• 250,722.1㎡		-	
획지면적			• 208,723.5㎡ (83.2%)	획지1	69,445.7㎡ (27.7%)	공동주택부지
				획지2	36,512.7㎡ (14.6%)	공동주택부지
				획지3	41,680.4㎡ (16.6%)	공동주택부지
				획지4	61,084.7㎡ (24.4%)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41,998.6㎡ (16.8%)	사회복지시설	2,000.0㎡ (0.8%)	사회복지시설부지
				근린공원	7,000.0㎡ (2.8%)	-
				녹지	11,266.0㎡ (4.5%)	-
				도로	21,732.6㎡ (8.7%)	일부 철도 중복결정
				철도	(12,139.7㎡)	도로 중복결정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목동동로 : 28m (구역 내 획지1 3m 확폭) - 목동동로8길 : 21~34m (구역내 획지1 6m확폭, 획지2 1~6m확폭, 획지3 1~19m 확폭) • 근린공원 신설, 녹지(폭원 20m) 연장 및 면적 증가 • 사회복지시설 신설 • 철도 상부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공동주택부지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 생활 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규모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사회복지시설부지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용적률 : 210%이하/ 230%이하/ 25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180m(49층) 이하 • 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16m,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40m/근린공원변 폭 30m) - 15층 이하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동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동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6~10m • 획지2, 3의 경계부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공동주택부지		
		• 목동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목동동로8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사회복지시설부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고층부 벽면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대지내 공지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2개소 / 획지 3, 획지 4)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동로, 목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 용도 배치구간	• 목동동로변 • 목동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동로, 목동로, 목동동로8길, 안양천로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2) 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부지의 건축물의 용도·밀도는 해당시설의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 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 4)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 5)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6) 저층배치구간, 중저층배치구간, 커뮤니티활성화배치구간등은 향후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창의적인 건축배치와 연계하여 조정할 수 있음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V.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14	신정동 329 일대	250,722.1	-	250,722.1	목동 14단지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250,722.1	-	250,722.1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7,676.0	증) 590.0	18,266.0	7.3	공원, 녹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233,046.1	감) 590.0	232,456.1	92.7	공동주택 등

■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신정동 330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8,266.0 (증 590.0)	•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조정
-	신정동 329-2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232,456.1 (감 590.0)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획지계획 변경 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7	30 (-)	주간선	1,600 (-)	도림동	신길동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 가각부 일부 포함 (*도로, 철도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49	25	보조간선	1,415	대 3-169	신정동 83-5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
변경	대로	3	149	25~28 (3)	보조간선	1,415 (187)	대 3-169	신정동 83-5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277	15	집산도로	582	대 2-37	신정동 331-1	일반 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변경	중로	1	A	25~34	집산도로	248	대 2-37	신정동 331-2	일반 도로	-	"	미집행구간 폐도 (*도로, 철도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78	15	집산도로	960	대 3-86	신정동 294-4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1	B	21~25 (21)	집산도로	960	대 3-86	대 3-170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C	15~27	특수도로	314	중 1-B	신정동 1278	보행자 전용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는 정비구역에 해당함

* 대로2-37 도로 가각부, 중로 1-A, 철도 중복결정

* 대로2-37 도로 가각부 일부가 정비구역 내 포함되어 중복결정에 따른 조서 변경으로 선형변경은 없음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49	대로 3-149	• 도로 확폭 - 25m → 28m(3m 확폭)	• 목동동로의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한 도로 확폭
중로 2-277	중로 1-A	• 도로 확폭 - 15m → 25~34m(10~19m 확폭)	• 대상지로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중로 2-278	중로 1-B	• 도로 확폭 - 15m → 21~25m(6~10m 확폭)	• 대상지로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	중로 2-C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2호선 양천구청역과 주변 지역주민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철도 상부 보행자도로 신설

나) 철도

■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 장 (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연결선)	신정동 1092일대 (신도림역~까치산역)	6,150 (585)	건고시 695호 (90.10.19)	도시철도 2호선
변경	①	철도	도시철도 (연결선)	신정동 1092일대 (신도림역~까치산역)	6,150 (585)	건고시 695호 (90.10.19)	도시철도 2호선

■ 철도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철도	• 철도 경계 조정	• 지장물 현황(필지 지목현황)에 부합하도록 철도시설 경계 조정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⑰	제17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29-2	2,433.9	감) 2,433.9	-	서고시 422호 (94.12.27)	-
폐지	⑱	제18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32-1	2,511.3	감) 2,511.3	-	"	-
폐지	⑲	제19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30-1	2,029.7	감) 2,029.7	-	"	-
신설	근-A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31	-	증) 7,000.0	7,000.0	-	-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⑰	제17 어린이공원	• 공원 폐지 - 면적 : 감) 2,433.9㎡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어린이공원 폐지
⑱	제18 어린이공원	• 공원 폐지 - 면적 : 감) 2,511.3㎡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어린이공원 폐지
⑲	제19 어린이공원	• 공원 폐지 - 면적 : 감) 2,029.7㎡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어린이공원 폐지
근-A	근린공원	• 공원 신설 - 면적 : 증) 7,000.0㎡	• 안양천변 연계 및 주변 소규모 단지 지역주민을 고려하여 근린공원 조성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㉓	1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29-1	6,833.6	감) 197.5	6,636.1	서고시 422호 (94.12.27)	-
변경	㉔	1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30-6	3,867.5	증) 762.4	4,629.9	"	-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㉓	14단지 연변녹지	• 녹지 면적 감소 - 면적 : 6,833.6㎡ → 6,636.1㎡ (감) 197.5㎡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녹지 선형 정형화
㉔	14단지 연변녹지	• 녹지 면적 증가 - 면적 : 3,867.5㎡ → 4,629.9㎡ (증) 762.4㎡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녹지 선형 정형화

3) 공공 · 문화체육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 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④	어린이집(14단지)	신정동 329-4	1,247.1	감) 1,247.1	-	서고시 422호 (94.12.27)	-
신설	A	14단지 사회복지시설	신정동 331	-	증) 2,000.0	2,000.0	-	-

■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폐지	④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신설	A	5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	어린이집 (14단지)	• 어린이집 폐지 - 면적 : 감) 1,247.1㎡	• 목동14단지 주민공동시설 내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현황 어린이집 폐지
A	14단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 면적 : 증) 2,000.0㎡	• 지역 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신설

라.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 결정조서

구분	위치	면적(㎡)	비 고
소 계	-	210,723.5	-
획지	1	양천구 신정동 329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양천구 신정동 332번지 일원	
	3	양천구 신정동 331번지 일원	
	4	양천구 신정동 330번지 일원	
	5	양천구 신정동 331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

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14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 고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 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부지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규모 및 설 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사회복지시설부지

3) 건폐율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14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건폐율	50% 이하	좌동	• 획지1, 2, 3, 4

4) 용적률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14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용적률	기준	210% 이하	좌동	• 획지1, 2, 3, 4
	허용	230% 이하	좌동	
	상한	250% 이하	정비계획 248.4% 이하	
	법적상한	-	300.0% 이하	

5) 높이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14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최고높이 (층수)	• 최고높이 : 180m(49층) 이하	좌동	• 획지1, 2, 3, 4
	• 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16m,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좌동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40m, 근린공원변 폭 30m) - 15층 이하	좌동	

6) 배치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14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동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 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좌동	• 획지1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동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6~10m • 획지2, 3의 경계부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 공동주택부지
	• 목동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목동동로8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 획지5 (사회복지시설부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 획지 1
고층부 벽면한계선 (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좌동	• 획지 1

7) 대지 안의 공지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14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공공보행 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2개소 / 획지 3, 4)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좌동	결정도 참고

8)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14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동로, 목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좌동	결정도 참고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 (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좌동	-
단지 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 동선 설치(권장)	• 공공보행통로변으로 커뮤니티 활성화구간 설정하여 보행 활성화 • 건축한계선 후퇴부에 보도형전면공지를 조성	세부 지침도 참고

9) 배치구간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14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 고
커뮤니티 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동로변 • 목동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좌동	-

10) 기타사항

구 분	특별계획구역14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 고
경관	• 가로경관특화방안을 수립하여 경관 심의시 제시	• 투시형 파사드 계획 및 이격배치를 통한 휴게공간 조성으로 이용자들의 편의제공과 보행환경 개선 • 낮은 식재배치로 열린경관 조성	-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 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 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 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 1~2인 및 노령가구 등을 위하여 공공주택 계획 세대수에서 전용 60㎡ 이하 비율 90%로 계획 •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 관계지침에 따라 소셜믹스 적용	-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동로, 목동로, 목동동로8길, 안양천로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목동로, 목동동로8길, 안양천로변 : 1.5m - 목동동로변 : 3.5m	교통처리 계획도 참고

Ⅵ. 목동14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목동1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목동1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양천구 신정동 329번지 일원	-	증) 250,722.1	250,722.1	-

3.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250,722.1	100.0	-
정비기반 시설등	소 계	41,998.6	16.8	-
	도 로	21,732.6	8.7	일부 철도 중복 결정,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공 원	7,000.0	2.8	-
	경관녹지	11,266.0	4.5	-
	사회복지시설	2,000.0	0.8	-
	철도	(12,139.7)	(4.8)	도로 중복 결정
획지	소계	208,723.5	83.2	-
	획지1	69,445.7	27.7	-
	획지2	36,512.7	14.6	-
	획지3	41,680.4	16.6	-
	획지4	61,084.7	24.4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250,722.1	-	250,722.1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7,676.0	증) 590.0	18,266.0	7.3	공원, 녹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233,046.1	감) 590.0	232,456.1	92.7	공동주택 등

■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신정동 330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8,266.0 (증 590.0)	•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조정
-	신정동 329-2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232,456.1 (감 590.0)	• 공동주택 획지(대지)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7	30 (-)	주간선	1,600 (-)	도림동	신길동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 가각부 일부 포함 (*도로, 철도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49	25	보조간선	1,415	대 3-169	신정동 83-5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
변경	대로	3	149	25~28 (3)	보조간선	1,415 (187)	대 3-169	신정동 83-5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277	15	집산도로	582	대 2-37	신정동 331-1	일반 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변경	중로	1	A	25~34	집산도로	248	대 2-37	신정동 331-2	일반 도로	-	"	미집행구간 폐도 (*도로, 철도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78	15	집산도로	960	대 3-86	신정동 294-4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1	B	21~25 (21)	집산도로	960	대 3-86	대 3-170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C	15~27	특수도로	314	중 1-B	신정동 1278	보행자 전용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는 정비구역에 해당함

* 대로2-37 도로 가각부, 중로 1-A, 철도 중복결정

* 대로2-37 도로 가각부 일부가 정비구역 내 포함되어 중복결정에 따른 조서 변경으로 선형변경은 없음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49	대로 3-149	• 도로 확폭 - 25m → 28m(3m 확폭)	• 목동동로의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한 도로 확폭
중로 2-277	중로 1-A	• 도로 확폭 - 15m → 25~34m(10~19m 확폭)	• 대상지로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중로 2-278	중로 1-B	• 도로 확폭 - 15m → 21~25m(6~10m 확폭)	• 대상지로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	중로 2-C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2호선 양천구청역과 주변 지역주민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철도 상부 보행자도로 신설

나)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 장 (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연결선)	신정동 1092일대 (신도림역~까치산역)	6,150 (585)	건고시 695호 (90.10.19)	도시철도 2호선
변경	①	철도	도시철도 (연결선)	신정동 1092일대 (신도림역~까치산역)	6,150 (585)	건고시 695호 (90.10.19)	도시철도 2호선

■ 철도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철도	철도 경계 조정	•지장물 현황(필지 지목현황)에 부합하도록 철도시설 경계 조정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⑰	제17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29-2	2,433.9	감) 2,433.9	-	서고시 422호 (94.12.27)	-
폐지	⑱	제18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32-1	2,511.3	감) 2,511.3	-	"	-
폐지	⑲	제19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30-1	2,029.7	감) 2,029.7	-	"	-
신설	근-A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30	-	증) 7,000.0	7,000.0	-	-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⑰	제17 어린이공원	• 공원 폐지 - 면적 : 감) 2,433.9㎡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어린이공원 폐지
⑱	제18 어린이공원	• 공원 폐지 - 면적 : 감) 2,511.3㎡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어린이공원 폐지
⑲	제19 어린이공원	• 공원 폐지 - 면적 : 감) 2,029.7㎡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어린이공원 폐지
근-A	근린공원	• 공원 신설 - 면적 : 증) 7,000.0㎡	• 안양천변 연계 및 주변 소규모 단지 지역주민을 고려하여 근린공원 조성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㉓	1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29-1	6,833.6	감) 197.5	6,636.1	서고시 422호 (94.12.27)	-
변경	㉔	1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30-6	3,867.5	증) 762.4	4,629.9	"	-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㉓	14단지 연변녹지	• 녹지 면적 감소 (감 197.5㎡) - 6,833.6㎡ → 6,636.1㎡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녹지 선형 정형화
㉔	14단지 연변녹지	• 녹지 면적 증가 (증 762.4㎡) - 3,867.5㎡ → 4,629.9㎡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녹지 선형 정형화

3) 공공 · 문화체육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④	어린이집(14단지)	신정동 329-4	1,247.1	감) 1,247.1	-	서고시 422호 (94.12.27)	-
신설	A	14단지 사회복지시설	신정동 331	-	증) 2,000.0	2,000.0	-	-

■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폐지	④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신설	A	5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사회복지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	어린이집 (14단지)	• 어린이집 폐지 - 면적 : 감) 1,247.1㎡	• 주민공동시설 내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현황 어린이집 폐지
A	14단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 면적 : 증) 2,000.0㎡	• 지역 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 시설 신설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비고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획지 1~4	800.00	지하
	경비실		600.00	지상
	소계		39,287.95	-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5,137.95	지상
	경로당		4,700.00	지상
	어린이집		2,350.00	지상
	작은도서관		3,000.00	지하
	다함께돌봄센터		2,800.00	지상
	주민공동시설		9,000.00	지하
	주민운동시설		4,000.00	옥외
	어린이놀이터		8,300.00	옥외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라 1,000세대 이상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500㎡에 세대당 2㎡ 더한 면적의 1.25배 이상 확보 = $(500\text{㎡} + 5,123\text{세대} \times 2) \times 1.25 = 13,432.5\text{㎡}$ 이상 < 39,287.95㎡ 계획

※ 향후 정비계획 결정 절차,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은 향후 통합심의(협의 등)을 통해 세부용도 확정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목동1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250,722.1	소계	210,723.5	신정동 329 일원	39	-	-	39	-	-
			획지1	69,445.7							
			획지2	36,512.7							
			획지3	41,680.4							
			획지4	61,084.7							
			획지5 (사회복지시설 부지)	2,000.0							

사.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최고 높이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허용	정비 계획	법적 상한																																											
신설	목동1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250,722.1	획지1	69,445.7	신정동 329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10 이하	230 이하	248.4 이하	300 이하	180m 이하 (49층)	-																																									
			획지2	36,512.7																																																		
			획지3	41,680.4																																																		
			획지4	61,084.7																																																		
			획지5	2,000.0		사회복지시설	50이하	250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5,123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 : 62.5%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6">세대수</th></tr><tr><th colspan="2">소계</th><th colspan="2">분양</th><th colspan="2">공공</th></tr><tr><td>합 계</td><td>5,123</td><td>100.0%</td><td>4,394</td><td>85.8%</td><td>729</td><td>14.2%</td></tr><tr><td>60㎡ 이하</td><td>894</td><td>17.4%</td><td>242</td><td>4.7%</td><td>652</td><td>12.7%</td></tr><tr><td>60~85㎡ 이하</td><td>2,310</td><td>45.1%</td><td>2,233</td><td>43.6%</td><td>77</td><td>1.5%</td></tr><tr><td>85㎡ 초과</td><td>1,919</td><td>37.5%</td><td>1,919</td><td>37.5%</td><td>-</td><td>-</td></tr></table>											구분	세대수						소계		분양		공공		합 계	5,123	100.0%	4,394	85.8%	729	14.2%	60㎡ 이하	894	17.4%	242	4.7%	652	12.7%	60~85㎡ 이하	2,310	45.1%	2,233	43.6%	77	1.5%	85㎡ 초과	1,919	37.5%	1,919	37.5%	-	-
구분	세대수																																																					
	소계		분양		공공																																																	
합 계	5,123	100.0%	4,394	85.8%	729	14.2%																																																
60㎡ 이하	894	17.4%	242	4.7%	652	12.7%																																																
60~85㎡ 이하	2,310	45.1%	2,233	43.6%	77	1.5%																																																
85㎡ 초과	1,919	37.5%	1,919	37.5%	-	-																																																
심의완화사항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 (완화용적률 51.6%)																																																			
건축물의 건축선등에 관한 계획			• 저층부 건축지정선(2층이하) : 목동동로변 획지선으로부터 4m • 건축한계선 (공동주택 부지)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동로변(3층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6~10m - 획지2,3 경계부 : 획지선으로부터 6m • 건축한계선 (사회복지시설 부지) - 목동동로8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안양천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획지선으로부터 6m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목동로변 획지선으로부터 13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획지 3,4 내 15m 설정 • 배치구간 - 저층배치구간(7층이하, 커뮤니티 활성화용도 2층이하) : 목동동로변 16m, 공공보행통로변 5m - 중저층배치구간(15층이하) : 목동동로변 40m, 근린공원변 30m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동로변, 목동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변																																																			

■ 정비계획용적률 계획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등 면적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소계	정비기반 시설 등	건축물 기부채납			
					대지지분	환산면적		
	250,722.1	208,723.5	47,560.9	41,998.6	2,882.3	2,680.0	27,088.4	7,172.4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제공면적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 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41,998.6㎡+2,882.3㎡+2,680.0㎡)-27,088.4㎡-7,172.4㎡ = 13,300.1㎡ (구역면적의 5.3%)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41,998.6㎡ = (도로)21,732.6㎡+(공원)7,000.0㎡+(녹지)11,266.0㎡+(사회복지시설)2,000.0㎡ = 41,998.6㎡							
건축물 기부채납 대지지분 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공동주택 102세대) 대지지분 : 2,882.3㎡ = (1,051,430.82㎡÷1,064,358.20㎡)×(6,393.98㎡÷457,426.71㎡)×208,723.5㎡ = 2,882.3㎡ ※ (주거연면적÷전체연면적)×(임대(제공)전용연면적÷주거전용연면적)×대지면적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 2,680.0㎡ ① 건축물 기부채납(사회복지시설) 환산부지 면적 1,163.0㎡ (※연면적 5,000.0㎡) - 지상층 연면적: (설치비용)3,671,818원 ^{주1)} ×(건축연면적)5,000.0㎡ ÷ (부지가액)15,785,679원 ^{주4)} = 1,163.0㎡ ② 건축물 기부채납(공동주택 102세대) 환산부지 면적 1,517.0㎡ (※연면적 14,844.35㎡) - 지상층 연면적 : (전용59㎡) : (설치비용)2,065,152원 ^{주2)} × (건축연면적)7,794.35㎡ ÷ (부지가액)15,785,679원 ^{주4)} = 1,019.7㎡ (전용84㎡) : (설치비용)1,974,343원 ^{주3)} × (건축연면적)1,308.80㎡ ÷ (부지가액)15,785,679원 ^{주4)} = 163.7㎡ - 지하층 연면적 : (설치비용)917,273원 ^{주3)} × (건축연면적)5,741.20㎡ ÷ (부지가액)15,785,679원 ^{주4)} = 333.6㎡ 주1)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4)」 : 4,039,000원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 주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97호) : (전용59㎡) 50㎡초과 ~ 60㎡이하 전층 평균가 2,271.667원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 : (전용84㎡) 60㎡초과 ~ 85㎡이하 전층 평균가 2,171.778원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 주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97호) : 지하층건축비 1,009,000원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 주4) 부지가액 : 2024년 평균 공시지가 7,892,840원/㎡의 2배							
기준용적률	• 210.0%							
허용용적률	• 230.0% - 공공보행통로 8.2%, 열린단지 5%, 돌봄시설 4.4%, 우수디자인+장수명주택 10%, 총 20% 적용							
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a(토지)) + (1.0 × a(건축물))] = 230% × [1 + (1.3 × 1.0 × 0.0516+ 1.0 × 0.0130)] = 248.40% ⇒ 정비계획용적률 248.4% 이하 ※ 가중치 :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 230% / 230% = 1 ※ a(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10,620.1㎡ / 205,841.2㎡ = 0.0516 ※ a(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환산부지) / 공공시설등 제공 후 부지면적 = 2,680.0㎡ / 205,841.2㎡ = 0.0130							
법적상한용적률	• 300.0% (건축계획 용적률 299.86%)							

■ 허용용적률 계획

구 분	인센티브량		적용
공공 보행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등 조성(지역권* 설정) -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대지면적) $\times a \times a = 1$이하 $: 210\% \times (8,188.2\text{m}^2 \div 208,723.5\text{m}^2) \times 1 = 8.2\%$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10%p 이내	8.2%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 (지형도면고시) - 기준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5%p	5%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 $\times a \times a = 0.1$이하 $: 210\% \times (2,800.0\text{m}^2 \div 13,432.5\text{m}^2) \times 0.1 = 4.4\%$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p 이내	4.4%
우수디자인 + 장수명주택	- 우수디자인 및 장수명주택 인증 - 기준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우수디자인 및 장수명주택 인증(최우수 15%, 우수등급 10%)	15%p 이내	10%
합 계	최대 20%p 이내		총 27.6% → 20% 적용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하여 계획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재난방지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자.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 분	지점	개선방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① ② ③ - ④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2020.11』 개선안 반영 - 지구단위계획 도로운영계획안 반영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반영 - 사업지 주변 도로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 대로 3-149호선(B=25.0m → 25~28m, L=187.0m) : 일방통행 5차로 - 중로 1-A호선(B=15.0m → 25~34m, L=248.0m) : 왕복 4차로 - 중로 1-B호선(B=15.0m → 21~25m, L=960.0m) : 왕복 4차로 - 주변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6개소)
진출입 동선	⑤ - ⑥	- 사업지 진출입구 설치(7개소) - 사업지 진출입구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m)
보행 및 자전거	- ⑦ - ⑧ - ⑨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사업지 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B=4.0~10.0m) - 사업지 내 공공보행통로 설치(B=15.0m, 2개소) - 사업지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B=1.5~3.5m) - 자전거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자전거보관소 설치 - 법정주차대수의 20% 이상
주 차 시 설	- ⑩	- 주차계획수립 - 법정주차대수 : 6,653대 - 주차수요대수 : 6,831대(2029년 원단위법) - 계획주차대수 : 10,331대(법정대비 155.3%, 수요대비 151.2%)
교통안전 및 기타	- ⑪ - ⑫	- 차량 진출입구 차량경고등 설치(7개소) -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면표시 설치

차.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도 2, 4등급, 개별비오톱평가도 3등급 및 평가제외등급	• 계획지구 내 공원, 녹지계획을 통해 녹지공간 최대 확보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안양천 및 인근 공원녹지와 도로로 인해 단절된 상태	• 전면공지 내 보행공간등을 조성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연계 도모	
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 도심지(대지)로 해당사항 없음	-	
4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 보전	-	• 해당 사항 없음	-	
5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조사	• 공공시설, 공원 및 공동주택을 반영한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6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 발생하지 않음	-	
7	지형·지질	지형·지질영향 최소화	■	• 표고 8.4~10.0m, 평균 경사도 6.6°의 완만한 지형	• 평지 형태로 지형변화는 경미하며, 건축터파기 공사로 부분적 지형변화 발생	
8	물순환, 수리·수문	자연물순환 유지	■	• 공공주택용지 내 조경녹지계획	• 생태면적률 36.09%	
9	수질	수질오염 방지	■	• 지표 수질(안양천) 및 지하수질 현황 조사, 공사 중 토사 유출 및 오수 발생	• 공사 중 수질저감 계획 수립 • 우수, 하수 처리방안 계획	
10	바람	바람길 및 미기후 개선	■	• 서울기상대 기상현황 조사 분석, 주풍향 등 검토	• 향후 세부 계획 시 바람방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녹지 수목 식재 통한 미기후 개선	
11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높은 4층 이상 주거지 및 일부 공원 등 조경수목식재 지로 온도가 높은 편	• 투수포장과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12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장 장비가동 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 영향	• 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저감, 환경정화수중 식재	
13	악취	악취공해 해결	-	• 해당 사항 없음	-	
1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계획지구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15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운영 시 생활 및 분뇨폐기물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	
16	에너지	에너지절약/효율 극대화	■	• 지역 에너지 소비현황 조사, 난방, 취사, 전력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이용량 증가	• 향후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검토 예정	
17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공사장 소음 유발, 운영 시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	• 공사 중 가설방음판넬, 저소음 저진동 장비 사용, 녹지 완충 공간 조성	
18	경관	주변경관과의 조화	■	• 시가화된 지역으로 인공경관이 주를 이룸	• 인근 개발예정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해 지상 49층 이하로 계획 • 인접 주거지와 연결되는 안전한 가로·세로환경을 조성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9	휴식 및 여가공간	양질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	■	• 주변으로 양천근린공원, 갈 산, 안양천 등 위치	• 목동로, 목동동로, 목동동로8길 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 계획 • 계획지구 내 공원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지상부 녹지공간 계획 및 확보	
20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연평균 및월별, 계절별 일 조 시간 검토	• 최고 지상 49층 이하 규모의 사 업계획 수립, 일조권 침해 수인 한도 준수	
21	보행 친화공간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	• 보차혼용도로이며 도로 확 폭 필요	• 주택용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 획하여 주요시설 연계 보행공간 확보 및 생활가로 활성화 도모	
22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	• 해당 사항 없음	-	
23	인구	인구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24	주거	주거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25	산업	산업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 대상지 200m 이내에 신목초등학교, 목일중학교, 신목고등학교 위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의건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 정비계획·건축계획 검토 시 신목초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건축 배치 시 일조영향등을 고려한 층수계획 • 향후, 동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의거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시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겠음	-

타.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착공전	착공 ~ 공사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현재 계획 수립중으로 주민 거주 중	- 펜스설치 및 유지·관리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법용 CCTV 설치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 방법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신설	소 계	-	210,723.5	
	획지1	양천구 신정동 329번지 일원	69,445.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양천구 신정동 332번지 일원	36,512.7	
	획지3	양천구 신정동 331번지 일원	41,680.4	
	획지4	양천구 신정동 330번지 일원	61,084.7	
	획지5	양천구 신정동 331번지 일원	2,000.0	사회복지시설

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목동1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양천구 신정동 329번지 일원	-	증)250,722.1	250,722.1	-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후 4년이내	(가칭)목동1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현황		증감	계획	-
			3,100		증) 2,023	5,123	

거.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시, 해당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상한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

구분	건립위치	대지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 (공급연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신설	획지 1,2,3,4	208,723.5	소계	102세대	-		8,777.28㎡
			전용59㎡	91세대	59.99㎡	82.59㎡	7,515.69㎡
			전용84㎡	11세대	84.99㎡	114.69㎡	1,261.59㎡

■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		• 300.0% 이하 (건축계획 : 299.86%)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 248.4%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 300% - 248.4% = 51.6%				
	증가된 용적률의 50%	• 51.6% × 50% = 25.8%				
	의무 연면적	• 208,723.5㎡(대지면적) × 25.8% = 53,850.66㎡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세대규모		세대수	공급연면적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계		627	53,902.53㎡	(의무) 53,850.66㎡ 이상 확보
		59.99㎡	82.59㎡	561	46,332.99㎡	획지
		84.99㎡	114.69㎡	66	7,569.54㎡	획지

VII. 2024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24.11.26.) 심의결과 : 수정가결

연번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1	• 도시계획시설(녹지)는 경관녹지 유지	• 녹지의 세분용도는 (지구단위계획) '경관 녹지' 유지하겠음	반영
2	• 공원계획은 공원활용 방안 등과 연계하여 면적 및 폭원 확대 방안 검토	• 사회복지시설(복지)를 공원과 연계 배치하여 동일한 공원 면적으로 폭원 추가 확보하였음 (폭원 39m → 49m)	반영
3	• 사회복지시설은 가급적 별도 획지로 계획하고, 세부용도는 노인요양시설로 결정	• 사회복지시설은 별도 획지로 계획하되, '노인요양시설' 수요면적(연면적 5,000㎡)을 확보할 수 있는 대지규모로 설정하였음 • 지구단위계획 위치를 준수하여, 안양천 가로변 기반시설 집약배치를 통해 활성화 및 공공성을 확보하였음	반영
4	• 높이 및 배치계획 관련하여 다음 사항 검토 및 반영 -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주동 높이 및 배치계획을 검토하고, 획지2 내 49층 랜드마크 주동은 주변 학교 위치를 고려하여 위치 조정	• 획지2 구간 내 신목초등학교의 경관부영향등을 고려하여 일부 주동 최고 층수를 40층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랜드마크 주동 층수계획: 35~49층→ 30~40층)	반영
	- 획지2 및 획지3을 공동개발로 묶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동개발 가능할 경우 주동 형태 및 배치계획에 대해 조정 검토	• 향후 통합심의 시 비정형화 된 획지2·3의 유연한 건축 배치 계획이 필요할 경우, 면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하여 가능할 경우 적정한 배치계획을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5	• '목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계획된 저층, 중·저층 배치구간에 대한 폭원 규정은 유지할 것	• 지구단위계획의 '배치구간 계획'을 준수하도록 하겠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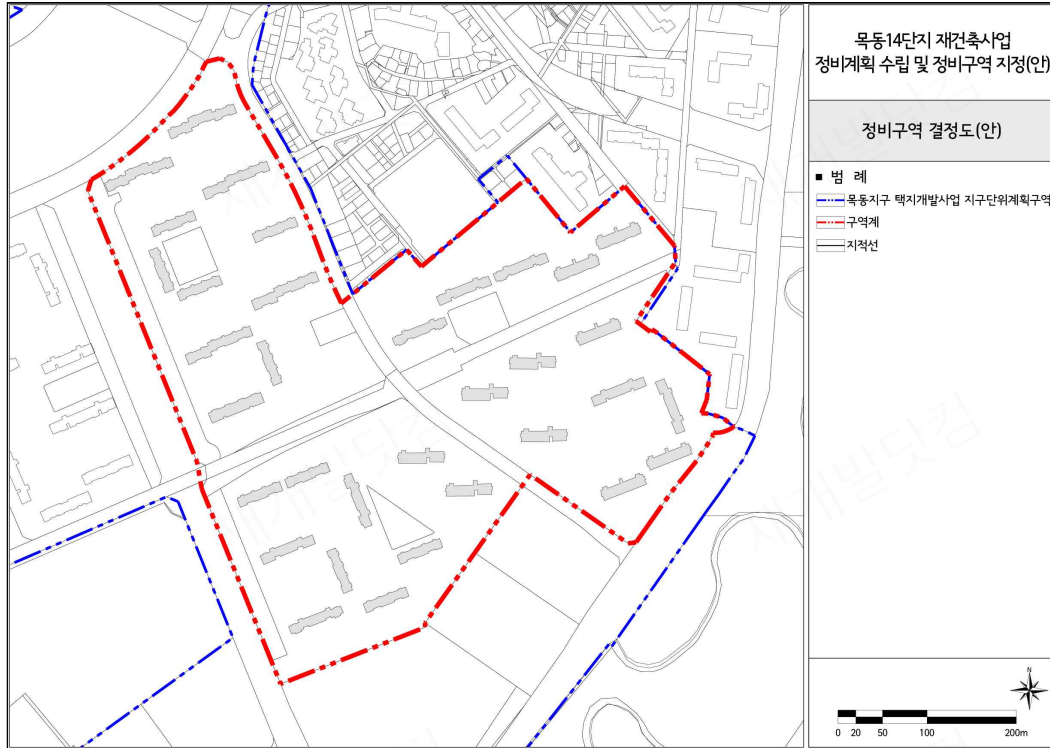
VIII. 관계도면 : 불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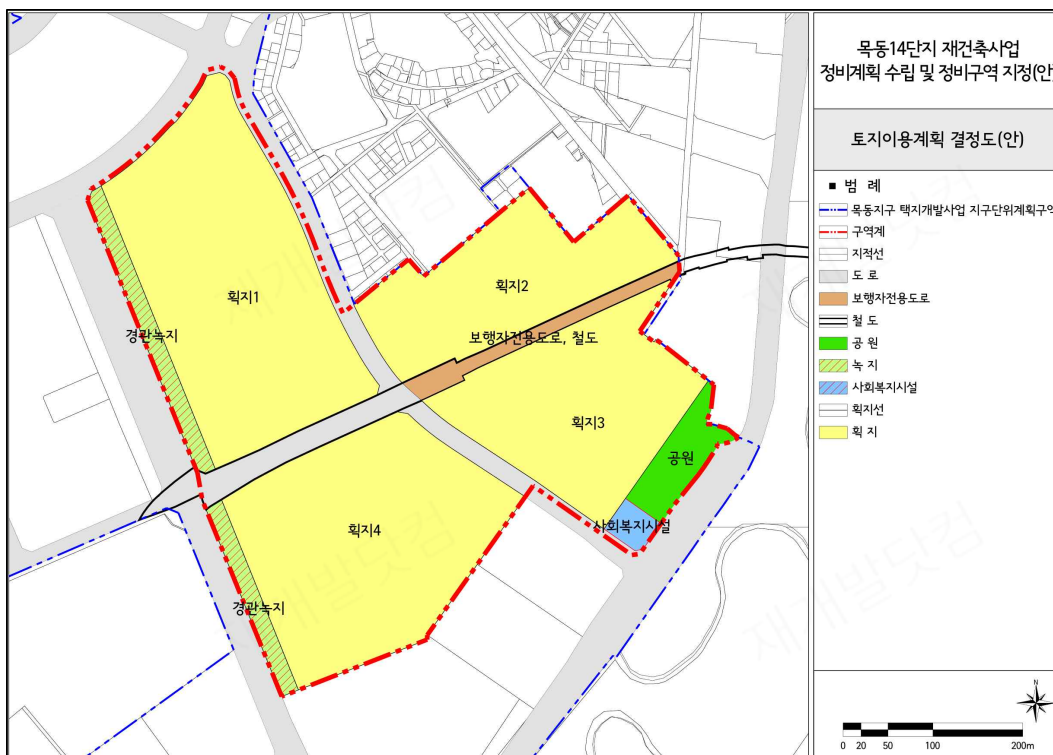
IX.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람 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향후 협의·심의 등 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목동1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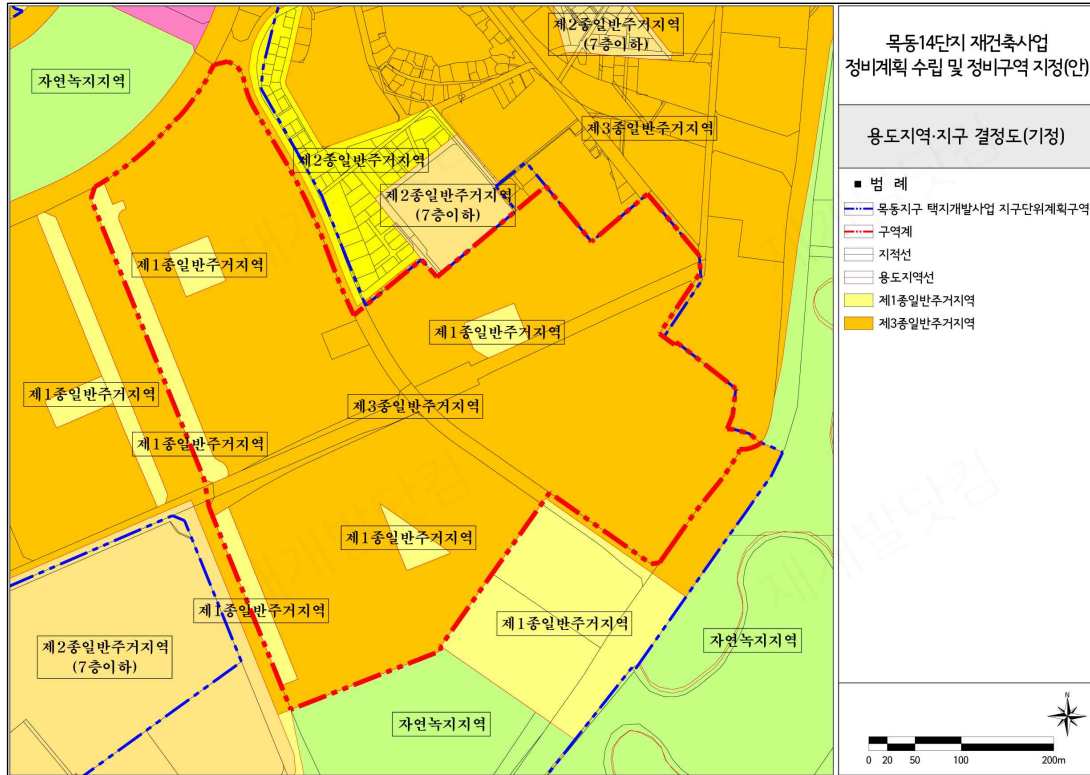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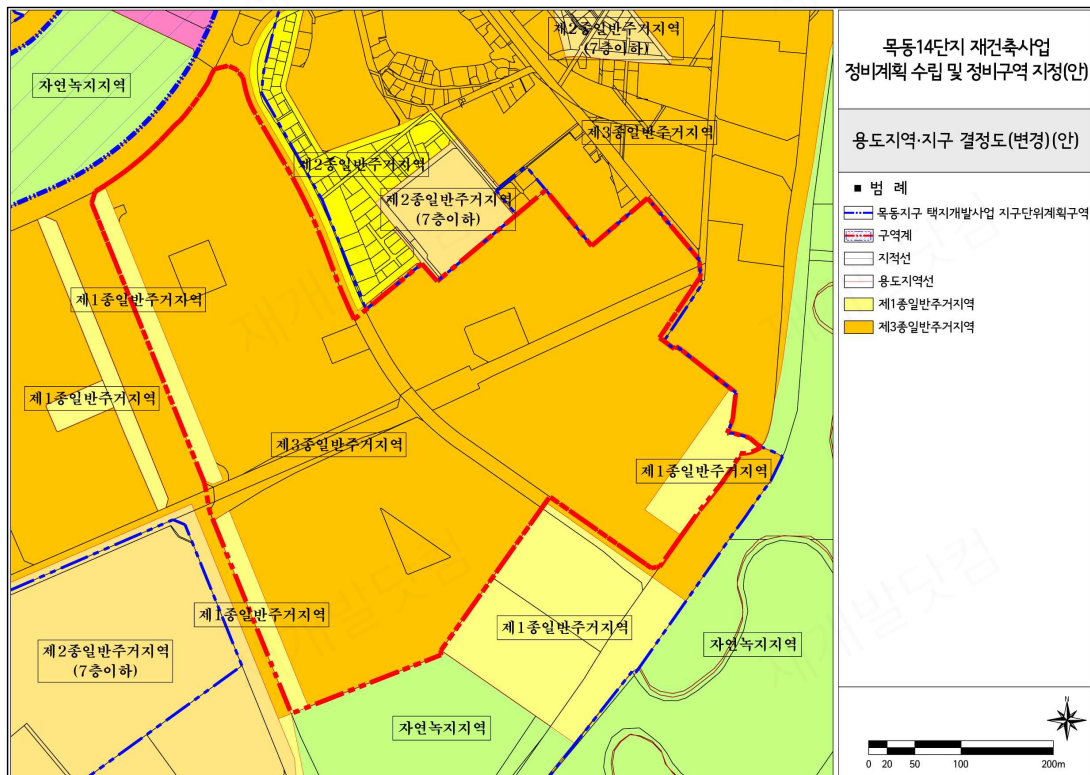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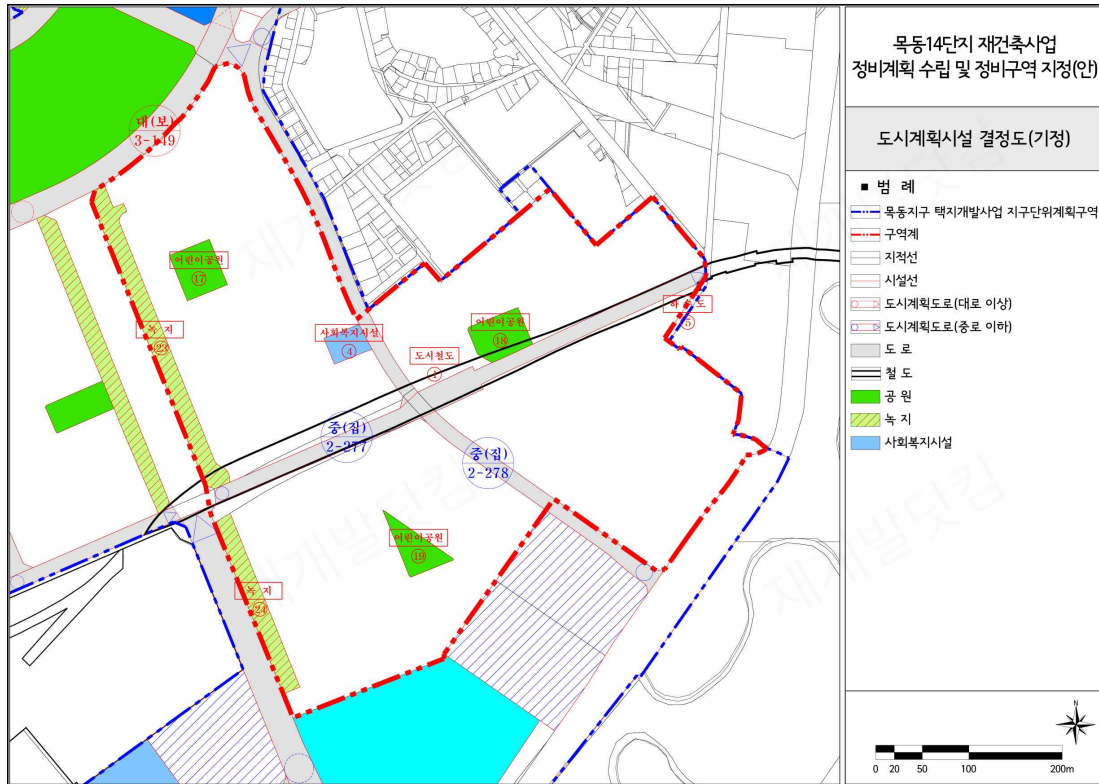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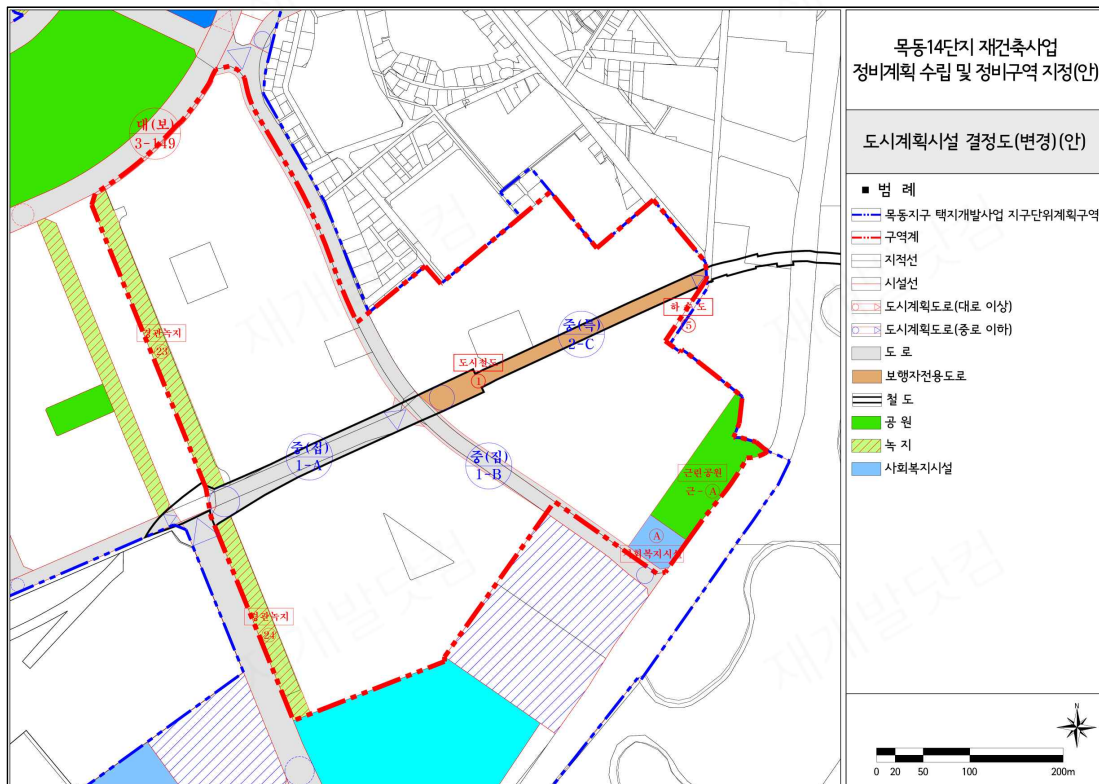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안)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안)



■ 정비계획 결정도(안)

